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	-----

제출년월일 : 2005. 11. 17.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04. 12. 23.) 및 동법시행령(2005. 6. 23.)의 개정으로 광역시·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를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체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구로 위임된 서울시 조례를 이용한 사항
- 제2조(허가·신고의 첨부서류)
 -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 제6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 제7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 제8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 제9조(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
 - 제10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제11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
 - 제12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 제13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14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15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제1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 제17조(현수막의 표시방법)
 -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 제19조(벽보의 표시방법)
 - 제21조(전단의 배부방법)
 - 제22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 제23조(표시방법의 완화)
 - 제24조(위원회의 구성)

- 제25조(위원회의 기능 등)
- 제27조(안전도검사)
- 제28조(안전도검사업무 위탁)
-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 제37조(시행규칙)

□ 인접구(양천구, 구로구, 강서구)의 합의안 또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추가된 사항

- 제6조의4항(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전까지 민원인에게 종료사항과 연장절차를 통보
- 제7조의6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 화재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자동 점멸기함" 표시금지대상에 포함
- 제14조의1항2,4호(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창문면적의 1/2 이내로 광고물을 설치하되 최대0.6m'을 0.8m'로, 업소당 표시 면적을 3m'을 4m'로,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을 20cm에서 25cm로 규정완화
 -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5cm이하인 광고물은 광고물 총 수량 산정에 포함하지 않도록 완화
- 제19조의2항(벽보의 표시방법)
 - 지정벽보판설치 및 관리사항은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규격 및 사용기간 등을 규정
- 제24조2항(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

□ 신설된 사항

- 제4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 허가·신고를 수리한 내용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한 경우에는 그 전산 대장으로 갈 음
- 제5조(계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등)
 - 계시시설 또는 광고물의 허가나 신고를 분리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할 경우도 분리신청 명시
- 제20조(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능력이 있는 단체·법인 등에게 위탁관리
- 제2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대심의 사항을 명시
-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 불법 광고물 제거 등 필요 조치후 행정 대집행법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소송비용 징수사항
-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행정처분 대장 등을 전산관리조치
- 제32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교육)
 - 옥외 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사항등을 규정
- 제33조(교육의 위탁)
 -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사항등 위탁관리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
- 제34조(수수료)
 -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 안전도검사, 옥외광고업자의 신고, 수수료 등을 규정
-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
-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

3. 소요예산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률 제7246호, 2004. 12. 23.)
-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868호, 2005. 6. 23.)

나. 기타 사항

- (1) 입법예고(2005. 11. 3.~ 2005. 11. 10.)결과 : 의견 없음

따로 불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신고의 첨부서류)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2. 구청장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를 하는 광고물등.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허가를 따로 받은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로서 1업소 당 표시면적(돌출간판은 1면의 면적을 말한다)이 각각 1제곱미터미만인 연립 간판(2 이상의 업소의 광고물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물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2. 표시면적(표시면적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 교통수단이용 광고를 중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③ 2건 이상의 허가가 동시에 신청되고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등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⑤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에 관한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상정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도서는 다음과 같다.

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서류 및 도서 등

나.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은 건축물과 광고물 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3조 (신고필증 교부 갈음)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벽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검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게시시설과 광고물의 분리 허가·신고 등) ①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 또는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물등의 허

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 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천광류를 사용하거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하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원색도안을 제외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둘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동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
6.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7.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광고물의 게시시설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를 이용하거나, 제25조제1항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것에 한함)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둘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것에 한함)
4.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간판
5.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도안 또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은 첨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의 광고내용 변경 또는 표시기간 연장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에 변경 또는 기간연장 내용, 처리일자 등 광고물등의 내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지상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맨홀·공동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4.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5. 횡단보도안전표시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6.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7. 기타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써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물건

제8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 또는 제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9조 (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 ①구청장은 연립간판에 대하여 게시 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

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게시시설은 건물 추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간판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바탕색 중 채도 10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입체형문자·도형 또는 조각형 광고물
 - 나. 조명을 하지 아니하는 표시면적 5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등) 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이상
2. 기타 광고물 : 다른 옥상간판으로부터 40미터이상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이내의 지역에 옥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인접한 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옥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미터이상이면서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하 이 조에서 “애드벌룬”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건물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이상일 것

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에만 띄울 것

②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애드벌룬이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옥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애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이상이어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이하 이 조에서 "수평거리"라 한다)는 도심반경 도로법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로부터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킬로미터까지는 2킬로미터이상, 도심반경 5킬로미터초과 10킬로미터까지는 1.5킬로미터이상, 도심반경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의 유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휴지통·벤취 등

2. 기타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 3층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당해 출입문 또는 창문 면적의 각 2분의 1이내로 하되 최대 0.8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업소당 표시 연면적은 4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바탕색은 3원색 또는 흑색을 2분의 1이상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4.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5센티미터이하인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하여 표

시하는 광고물등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가로크기는 200센티미터이내, 세로크기는 25센티미터이내로 하되, 총 면적은 0.4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 단순 문자변환방식(상·하 또는 좌·우로 흐르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문자·도형 또는 바탕에 사용하는 색채는 주변과 조화되어야 하며, 3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영 제31조제4항제3호 및 조례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당해 업소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광고물등의 점멸 또는 화면의 변화회수가 1분간에 1회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 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멸로 보지 아니한다.
- ③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각각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문자·입체형·모형 등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④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각 창문의 표시면적 중 4분의 1이내에 한한다)·상징도형 또는 공익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하나의 업소에 창문이용 광고물을 동시에 2개이상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내용 11개이상의 연립간판으로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를 12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2.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내용으로서 1업소 당 표시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미만인 연립간판을 건물 측면 2층과 3층 벽면에 판류·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 2층과 3층의 높이를 합한 길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4.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둘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영 제14조의 규정은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에 한하여 표시하되,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건물 벽면중 1면에 각각 하나의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 폭의 3분의 2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8미터이내로 하되,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건물의 1층벽면에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 2미터이내 또는 가로 2미터이내, 세로 3미터이내의 게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전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벽면과 간판 또는 게시판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

②지면에 설치하여 표시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부지에 한하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2.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지주이용 공연간판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현수막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게시시설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게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영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수막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밝은색으로서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게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5. 현수막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네온 또는 천광류를 이용하는 조명 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이내, 건물전체에는 5개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 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의 일반 건물에는 건물전체에 2개이내로서, 합계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게시시설에 한줄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 할 수 있다.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주 및 현수막 게시률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1미터이내,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 게시률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2. 연면적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하나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업소의 수 등 여전상 하나의 게시시설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초과 1천 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하되 게시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수막의 게시시설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게시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의 가로폭은 지정게시대의 가로폭(게시률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9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게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멀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제18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①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폭 15미터이하의 도로변으로서 보행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나.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2. 규격은 가로 7.2미터이내, 세로 7미터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5미

터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계시대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지정계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 이상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지정계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현수막을 2회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게시순서는 신청의 순으로 하며, 게시신청 현수막이 게시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용, 기타 순으로 게시순서를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청장은 제1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벽보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벽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정벽보판의 설치 위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이내, 높이 2.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지정벽보판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이내로 하며, 동일내용의 벽보를 2회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벽보의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0조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의 효율적 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법인 등으로 하여금 현수막 지정계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산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22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재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물등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이내 이어야 한다.
- ③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주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는 빛의 밝기·색깔의 표출지수(장애·침해 여부의 결정을 포함)를 광고물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표출지수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기의 성능개선·전부 또는 일부의 표출중단·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적 1제곱미터이하로서 구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은 광고표출 시간별로 20퍼센트이상으로 하며, 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가에 관한 사항은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청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각각 정하여 표출 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구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 또는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광고물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위원회는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그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 과장급으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심의 한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가로형, 세로형광고물
 3. 세로 5미터이상의 둘출광고물
 4. 육상광고물(육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5.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광고물(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6.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7.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8.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및 교통시설이용광고물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다만, 백열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10. 선전탑 및 아취형광고물
- ② 제1항의 광고물은 소심의로 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 ①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1.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게시시설중 상단이 당해 건물 4층이 상에 설치된 것
2. 공연간판중 영 제38조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판류형간판
4. 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영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표시허가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안전도검사업무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1인 이상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기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장비

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4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건축분야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4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전기분야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등
 -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 중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등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띠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

용할 수 없는 광고물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광고물등을 제거한 취지

2.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3. 광고물등을 폐기처분한 경우 그 사유

②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규격·표시내용·수량

2. 위반장소·위반사항 및 관련규정

3. 광고물등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

4. 보관일시·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

5. 광고물등 또는 매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목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 관리함에 있어 행정처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영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 행정처분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옥외광고물등

에 관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시간의 범위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전에 교육이 있는 경우와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해당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 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 수강절차, 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육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육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3. 그밖에 관훈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신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신청서를 교부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2월 이전에 교육이 있는 경우와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해당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 종료 후 1개월이내에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이수대장과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3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제34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벽보등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 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에 의하며, 금액산정 방법은 영 별표 4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

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태료부과 사항의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6]에 의하며, 금액 산정방법은 영 별표 5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의 기록을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 또는 표시한 광고물등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그 표시기간 종료일을 2008년 12월31일까지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무 또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필 검인(제3조 관련)

옥외광고물 신고 필 검인

광고내용 :

개시대 :

표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 현수막 : 가로 8~12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벽 보 : 가로 3~6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⑩ 변경 사항	⑪ 비 고
	② 성 명	③ 주민 등록 번호	④ 업 소 명	⑤ 전화 번호	⑥ 주 소	⑦ 옥외 광고업 신고번호	⑧ 종류	⑨ 수량	⑩ 규 격	⑪ 표시 위치	⑫ 표시 기간	⑬ 광고 내용	⑭ 준공 일자	⑮ 성 명	⑯ 주 소	⑰ 전화 번호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3호서식>

<앞 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

신 청 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검사구분	신규·갱신·변경
⑦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⑧ 광고물등의 종류(조명)		
⑨ 표시위치 또는 장소		⑩ 광고물등의 규격(m)		
⑪ 신청일자		⑫ 검사일자		
⑬ 검사항목	이면기재(당해 광고물등에 해당되는 항목을 검사함)			
⑭ 검사의견 (종합의견)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탁검사기관(단체, 법인) ⑪

검사원 직위 :

성명 : ⑫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뒷 면>

독의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항목

검사 항 목	검사내용 및 검사기준	검사 결 과	
기본 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 (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관제 법 규	각종 법령 및 고시·령령 등 위반행위		
사용 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앵커볼트·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적정여부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노화·균열·변형 등 적합성 여부 및 접합상태	
	구성자재	건물의 균열·파손·변형 등(하중·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여부	
	용접상태	접합상태, 불트·리벳·너트 등의 풀림·마모 등 확인	
		변형, 흰,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전기 설비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배선상태의 적정여부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의 사용여부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의 사용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관리 여부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여부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장애 여부		
기타	강풍·폭우·폭설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한 이후 또는 폭발·충격 등 인위적 충격을 받은 이후의 안전성 여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등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① 신 청 변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물등 허가일자 (허가번호)	⑦ 광고 물등 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 물등 의 규격	⑩ 검사 일자	⑪ 검사 구분	⑫ 검사 결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30일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			
신 청 자	①업 소 명 (단체명)		②점사지역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영업장 소재지		⑦전 화 번 호	
<p>「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등록증 사본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검사인력·시설·장비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수 수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입 소 명 (단체명)		②검사지역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⑥영업장 소재지		⑦전화번호	
⑧위탁기간	20 . . . ~ 20 . . . (년 월)		
<p>「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옥외광고 물등 관리 조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p> <p>년 월 일</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① 일련 번호	② 광고물 종류	③ 표시 내용	④ 수 량	⑤ 보 관 연월일	⑥ 보 관 장 소	⑦ 위 반 장 소·위 치	⑧ 담당 (취급)자	⑨ 비 고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8호서식>

광고물등 반환 청구서

청 구 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광고물 종류		⑤ 수 량		
⑥ 규격 및 형태		⑦ 표시내용		

위의 광고물등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광고물 종류		⑤ 수 량		
⑥ 규격 및 형태		⑦ 표시내용		
⑧ 매각한 광고물 등의 매각금액	원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제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전화번호	
	⑤주소		⑥신고번호	
⑦제교부신청 사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제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⑧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업(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신고번호	
	⑤영업장소제자 (전화번호)			
신고내용	⑥신고구분	휴업(), 재개업(), 폐업()		
	⑦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⑧신고사유			
<p>「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위와 같이 휴업·재개업·폐업을 신고합니다.</p> <p>년 월 일</p> <p>신고인 ⑨</p> <p>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재개업시는 재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II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의 교육수료필증		
①교육의 종류				
②교육년월일			③교육시간	시간
수 료 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소 속 업체명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32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또는 교육위탁 실시자)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물등의 교육이수 대장

①연번	②교육의 종류	③교육년월일	④교육시간	⑤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업체명	⑧비 고 (연락처)

364mm×257mm 보존용지(1종) 70g/m²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

교 육 대 상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소명	④영업장소재지	
	⑤주소 (전화번호)		
교 육 계 획	⑥일시		
	⑦장소		
⑧불참사유			

「서울특별시영동포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㊂

서울특별시영동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옥외광고물등의 교육위탁지정 신청서		30일	
신 청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법인)		
	④ 주 소 (전화번호)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전 화 번 호
<p>「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옥외광고 물등 관리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위탁 지정을 신청합 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⑦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인(기관·단체)의 소개서(보유시설·장비·인력 등 포함)			수 수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 ²)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물등의 교육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 소 명 (단체·법인)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영 등 포 구 청 장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표 1]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2조 관련)

종 류	교 육 시 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8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 4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체,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p>신규로 옥외광고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p>	<p>○ 종사 전에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종사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 옥외광고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표시에 관한 사항 3시간 면제</p>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규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등) 	옥외광고업자 (필요시 종업원도 실시)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로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34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준	수수료
1. 가로형·세로형간판			
가. 일반 간판 (가로형·세로형간판)	개	6제곱미터이하	4,000
	m'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500
나. 건물 축·후면 4층 이상의 판류이용 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5제곱미터이하	5,000
	개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0,000
	개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40,000
	m'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2. 들출간판			
이·미용업소 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개	1제곱미터이하	10,000
	개	1제곱미터초과 3.5제곱미터 이하	20,000
	개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30,000
	m'	1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00
	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함)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기타변경	개	해당 광고물(가로형·지주이용)에 준함	
나. 내용변경	개		5,000
4. 옥상간판			
	개	10제곱미터이하	50,000
	개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100,000
	개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200,000
	m'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5. 지주이용간판			
	개	1제곱미터이하	5,000
	개	1제곱미터초과 5제곱미터이하	10,000
	개	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20,000
	m'	1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의 면적	2,000
	m'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4,000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개		
나. 지상에 표시하는 것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다. 옥상에 표시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20,000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개	1제곱미터이하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3,000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20개 이하 20개 초과 매20개까지 가산	15,000 10,000
8. 교통시설(지하도)이용광고물	개	5제곱미터 이하	15,000
	개	5제곱미터 초과	20,000
9.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500,000
나. 열차·자동차·선박·항공기	대	1.5제곱미터이하	2,000
	m'	1.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취광고물	개		20,000
12. 창문이용 광고물	개		20,000
13. 현수막			
가. 건물외 벽면 현수막	개	20제곱미터이하	20,000
	m'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	1,000
나. 지주이용 현수막	개		2,000
다. 지정계시대 현수막	개		10,000
라. 현수막 게시시설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14. 벽보	매	20매 이하 20매 초과 50매 이하 50매 초과 매50매까지 가산	5,000 10,000 10,000
15. 전단	매	매1,000매까지	5,000
16. 연립간판의 게시시설			
가. 신규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나. 기간연장, 변경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의 4분의 1	
17. 주소·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2항)	건		5,000
18.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	건		30,000
19. 기타 광고물			
가. 차량탑재 영상광고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나. 공중전화 부스이용 광고		일반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준함	
다. 깃발이용광고		지주이용 현수막에 준함	
라. 기타종류의 광고물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수수료의 계산방법

- (1) 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광고물등의 표시면적(광고물의 태두리포함)은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만 산정하여 반올림하고, 산정된 금액의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하되, 입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하는 벽면간판에는 계산된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 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 (4)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규격·위치·장소변경 등 기타 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규격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 (5)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 전액을 징수한다.
-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광고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한다.
- (7)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선전탑 등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토지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이용료·사용료 등은 관계법령 또는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4조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전물 측·후면 4층 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4미터 이상의 계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22,000 45,000 3,0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15,000 22,000 3,000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 이용간판, 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4미터이상의 계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15,000 22,000 1,500
4. 현수막계시시설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미터이하 연면적 80제곱미터초과 1제곱미터마다 가산	22,000 45,000 2,000
5. 기타 광고물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등에 준함	

※ 수수료의 산정방법

- (1) 광고물등의 연면적에는 계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계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
(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백열등·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내부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하며,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에는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하고, 일부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 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각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기준으로 함).
- (3) 기타 산정방법은 별표 2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제3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 수 료	관련 법 규
신 규	업 소 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 소 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 중 관할구역 안에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와 업소 명을 변경한 때의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5]

옥외광고물등의 과태료부과 세부기준(제35조 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금 액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일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일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8만원
•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0.8제곱미터미만	13만원
•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미만	19만원
•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	25만원
•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	30만원
•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39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	45만원
•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	60만원
•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79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	80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 초과	79만 원+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5만원
•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0.8제곱미터미만	7만원
• 연면적 0.8제곱미터이상 1제곱미터미만	9만원
• 연면적 1제곱미터이상 1.3제곱미터미만	15만원
• 연면적 1.3제곱미터이상 1.6제곱미터미만	20만원
• 연면적 1.6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29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2.3제곱미터미만	35만원
• 연면적 2.3제곱미터이상 2.6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2.6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49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	50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초과	49만 원+3제곱미터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나. 현수막	
(1) 표시면적에 따른 부과기준	
• 면적 1.0제곱미터미만	5만원
• 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7만원
• 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9만원
• 면적 3.0제곱미터이상 3.7제곱미터미만	13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료 금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3.7제곱미터이상 4.4제곱미터미만 면적 4.4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면적 6.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면적 8.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면적 10.0제곱미터 면적 10.0제곱미터초과 <p>(2) (1)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p>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49만원 49만원+10제곱미터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배 적용
다. 벽 보	
(1) 일반 광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0장 11 ~ 20장 21장 이상 	장당 1만원 장당 1만5천원 장당 2만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0장 11 ~ 20장 21장 이상 	장당 1만5천원 장당 2만원 장당 3만원
라. 전 단	
(1) 일반 광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0장 11 ~ 20장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장당 1만원 장당 1만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광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 10장 11 ~ 20장 21장 이상 	장당 1만5천원 장당 2만원 장당 3만원
1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25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45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 3>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별표 6]

옥외광고물등의 이행강제금부과 세부기준(제36조 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1. 가로형·세로형·공연간판	
• 면적 2.0제곱미터미만	20만원
• 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0만원
• 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5만원
• 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55만원
• 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 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 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 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 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 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 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45만원
• 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65만원
• 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85만원
• 면적 20.0제곱미터	200만원
• 면적 20.0제곱미터초과	199만원+20제곱미터초과면적의 제곱미터 당 10만원을 가산
2. 둘출간판	
•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20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0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9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55만원
•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 연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 연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 연면적 20.0제곱미터	200만원
• 연면적 20.0제곱미터초과	199만원+20제곱미터초과면적의 제곱미터 당 10만원을 가산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3.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에드벌룬	
• 연면적 0.5제곱미터미만	30만원
• 연면적 0.5제곱미터이상 1.0제곱미터미만	35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48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3.5제곱미터미만	55만원
• 연면적 3.5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65만원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4.5제곱미터미만	80만원
• 연면적 4.5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95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	20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초과	199만원+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 제곱미터 당 10만원을 가산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에드벌룬, 건 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판류이용 가로형간판	
• 연면적 2.0제곱미터미만	30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35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9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6.0제곱미터미만	55만원
• 연면적 6.0제곱미터이상 7.0제곱미터미만	65만원
• 연면적 7.0제곱미터이상 8.0제곱미터미만	75만원
• 연면적 8.0제곱미터이상 9.0제곱미터미만	85만원
• 연면적 9.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95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2.0제곱미터미만	110만원
• 연면적 12.0제곱미터이상 14.0제곱미터미만	130만원
• 연면적 14.0제곱미터이상 16.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 연면적 16.0제곱미터이상 18.0제곱미터미만	170만원
• 연면적 18.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190만원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25.0제곱미터미만	210만원
• 연면적 25.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	230만원
• 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 35.0제곱미터미만	245만원
• 연면적 35.0제곱미터이상 40.0제곱미터미만	260만원
•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 45.0제곱미터미만	280만원
• 연면적 45.0제곱미터이상 50.0제곱미터미만	290만원
• 연면적 50.0제곱미터이상	300만원
• 연면적 50.0제곱미터초과	299만원+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액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 가. 선전탑·아취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5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60만원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70만원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70만원+2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100 만원이하)
나.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드벌룬(공) 1개 40만원 • 에드벌룬(공) 2개 60만원 • 에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 3개 초과 1개당 5만원 가산(100만원이하)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40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5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60만원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20.0제곱미터미만 70만원 •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 80만원+2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 당 5만원 가산(100 만원이하)
나. 교통안내소	일반 가로형간판에 준함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관광안내도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라.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 장이 인정한 공공시설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마. 가로 내지 라목 의의 공공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5.0제곱미터미만 25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 3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제곱미터미만 35만원 • 연면적 15.0제곱미터이상 36만원+15.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50만원 미만)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금 액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비행선	
•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15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150만원+1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2) 유인비행선	
•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	200만원
•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	200만원+ 10.0제곱미터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10만원 가산
나. 그밖의 교통수단	
• 연면적 1.0제곱미터미만	10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이상 2.0제곱미터미만	20만원
• 연면적 2.0제곱미터이상 3.0제곱미터미만	29만원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미만	35만원
• 연면적 4.0제곱미터이상 5.0제곱미터미만	45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	50만원
• 연면적 5.0제곱미터초과	49만원+5제곱미터 초과면적 1제곱미터당 5만원 가산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 4> 이행강제금 금액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 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 2002. 5. 10 (제정)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 (안) 2005. . (전부개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육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허가·신고의 첨부서류)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과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육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는 광고물들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구청장이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표시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광고물 등.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색사진, 원색도안,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영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허가를 따로 받은 육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로서 1업소 당 표시면적(돌출간판은 1면의 면적을 말한다.)이 각각 1제곱미터미만인 연립간판(2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게시시설 또는 구조물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 등 <p>②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중에 의우는 애드벌룬 2. 표시면적(표시면적이 2개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제곱미터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중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p>③ 2건이상의 허가가 동시에 신청되고 동일한 원색도안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만 원색도안을 첨부할 수 있다.</p>

	<p>④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상·규격·제료·구조·외장 등이 동일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가 이미 제출된 광고물등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p>⑤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 또는 이와 유사한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에 관한 원색도안은 그 내용을 상정하는 원색사진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⑥ 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도서는 다음과 같다.</p> <p>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는 원색사진·원색도안·서류 및 도서 등</p> <p>나.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들은 건축물과 광고물등이 연계된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인천 확인서류</p>
제3조(신고필증 교부 갈음)	<p>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액보의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여백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인을, 전단의 경우에는 암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p>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 ①서울특별시영동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개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p>제4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기록관리)</p> <p>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p>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사항과 표시기간 연장 철차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개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 허가·신고 등)
	<p>①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시설 또는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께 있어 개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으며,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구청장은 개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한 경우에는 영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할 수 있다.</p>

<p>제6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p> <p>① 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배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들은 제외하며, 충전의 표시기간이 1년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원색도안을 제외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둘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등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육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개시시설 6.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7.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간판의 개시시설 <p>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배온류를 이용하거나, 제25조제1항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것에 한함)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둘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것에 한함) 4.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립간판 5.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6.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이하인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 다만, 영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색도안 또는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원색사진은 첨부하여야 한다. <p>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의 광고내용 변경 또는 표시기간 연장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영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에 변경 또는 기간연장 내용, 처리일자 등 광고물등의 내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사항과 연장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p> <p>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하철·저하도·지하상가 등 지하시설물의 공기조절장치 등 지상기기(차폐시설을 포함한다), 지상변압기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벤들·공동구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방음벽·식축·용벽 및 계단 4.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5. 횡단보도안전표시등 등 교통안전시설물 6.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7. 기타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써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물건
	<p>제8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p> <p>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금지 또는 제한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p>제3조(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p> <p>① 구청장은 연립간판(2이상의 업소의 간판을 하나의 개시시설 또는 구조에 각각 표시하는 간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개시시설은 건물주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간판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p>	<p>제9조(연립간판의 허가·신고 및 표시방법 등)</p> <p>① 구청장은 연립간판에 대하여 개시시설과 광고물을 분리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할 수 있으며,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함에 있어 개시시설은 건물주가, 광고물은 표시하고자 하는 자가 각각 허가신청 또는 신고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간판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영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0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p> <p>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락·연기·안개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p>3. 바탕색 중 채도 10이상인 적색(한국표준색표집에 의한다) 또는 흑색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광고물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일체형문자·도형 또는 조각형 광고물</p> <p>나. 조명을 하지 아니하는 표시면적 5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p> <p>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11조(육상간판의 표시방법 등)</p> <p>①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육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호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p> <p>1. 내운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 다른 육상간판으로부터 50미터이상</p> <p>2. 기타 광고물 : 다른 육상간판으로부터 40미터이상</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이내의 지역에 육상간판의 표시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평거리 유지를 위하여 인접한 구의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인접한 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육상간판의 상단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60미터이상 이면서 별도의 계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12조(에드벌룬의 표시방법)</p> <p>①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이하 이 조에서 "에드벌룬"이라 한다)이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각 건물육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가 400미터이상일 것</p> <p>2. 공중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일출시부터 일몰시 까지)에만 띄울 것</p> <p>② 영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드벌룬이 다른 광고물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다른 광고물등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건물육상의 고정부분으로부터 에드벌룬 상단까지 높이의 1.5배이상이어야 한다.</p> <p>③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에드벌룬간의 수평거리(이하 이 조에서 "수평거리"라 한다)는 도심반경 도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원표로부터의 최선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킬로미터까지는 2킬로미터이상, 도심반경 5킬로미터초과 10킬로미터까지는 1.5킬로미터이상, 도심반경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킬로미터이상으로 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의 유지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휴자통·벤취 등 2. 기타 구청장이 공공의 편익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한 공공시설물 <p>② 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p>
	<p>제14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찬·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률 3층이하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당해 출입문 또는 창문 면적의 각 2분의 1이내로 하되 최대 0.8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업소당 표시 면적은 4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3. 색체는 진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바탕색은 3원색 또는 흑색을 2분의 1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5센티미터이하인 광고물은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 있어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p>②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출입문 또는 창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들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가로크기는 200센티미터이내, 세로크기는 25센티미터이내로 하되, 총면적은 0.4제곱미터이내이어야 한다. 2. 단순 문자변환방식(상·하 또는 좌·우로 흐르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문자·도형 또는 바탕에 사용하는 색체는 주면과 조화되어야 하며, 3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 제31조제4항제3호 및 조례 제22조제4항의 규정은 창문이용 광고물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당해 업소의 영업시간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6. 광고물등의 정렬 또는 화면의 변화회수가 1분간에 1회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렬로 보지 아니한다. <p>③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각각의 출입문 또는 창문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문자·입체형·모형 등 면적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p>

	<p>④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각 장문의 표시면적 중 4분의 1이내에 한한다)·상정도형 또는 공익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광판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⑤ 하나의 업소에 창문이용 광고물을 동시에 2개이상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p> <p>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1층 출입구(개별업소의 출입구를 제외한다) 양측에 각각 하나의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일체형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연립간판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를 말한다)는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내용 11개이상의 연립간판으로서 구청장이 특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가로크기를 120센티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2.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의 축면 또는 후면에 일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3.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로형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정하는 내용으로서 1업소당 표시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미만인 연립간판을 건물축면 2층과 3층 벽면에 판류·일체형문자·도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 2층과 3층의 높이를 합한 길이와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4. 밖면과 일착시켜야 하며, 밖면으로부터의 둑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영 제14조 의 규정은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에 이를 준용한다.
	<p>제16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p> <p>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벽면에 설치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에 한하여 표시되되,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건물벽면중 1면에 각각 하나의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표시되는 공연간판 전체의 가로크기는 당해 건물 폭의 3분의 2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첫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창문이 없는 벽면에 표시하는 경우의 세로크기는 8미터이내로 하되, 건물높이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p>2. 건물의 1층 벽면에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 2미터이내 또는 가로 2미터이내, 세로 3미터이내의 계시판 1개를 설치하여, 공연중이거나 공연할 내용에 관한 벽보 또는 사진을 표시할 수 있으며, 당해 건물에 공연장이 2개 이상으로서 1개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3. 벽면과 간판 또는 계시판의 간격은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미터이내이어야 한다.</p> <p>② 지면에 설치하여 표시하는 공연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연장이 있는 건물의 부지에 한하여 공연중인 내용과 다음 공연할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2. 영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은 거주이용 공연간판에 이를 준용한다.
	<p>제17조(현수막의 표시방법)</p> <p>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신고를 거친 개시시설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정개시대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현수막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개시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바탕색은 3원색 및 흑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밝은색으로서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4. 크기는 개시시설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멀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5. 현수막에는 내부조명 또는 자체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내온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p>②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의 개시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경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경포의 등록을 한 건물에는 하나의 벽면에 2개이내, 건물전체에는 5개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당해 벽면 면적(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p>2.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반 건물에는 전물전체에 2개이내로서, 합계면적은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 면적(창문 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과 5분의 1이내(최대 225제곱미터)이어야 하며,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p> <p>3. 벽면에 밀착하여야 하며, 계사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 높이의 4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계사시설에 현수 또는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가로크기는 4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p>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계사시설은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주 및 현수막 계시틀을 포함한 가로크기는 1미터 이내,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며, 현수막 계시틀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2미터이내로 할 수 있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를 넘는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하나의 계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업소의 수 등 예전상 하나의 계사시설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1천제곱미터마다 1개씩(최대 10개이내) 추가하여 설치되어 계사시설간의 수평거리는 10미터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의 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현수막의 계사시설은 간판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계사시설의 재질은 스텐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구청장이 도시미관의 저해 또는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p>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계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수막의 가로폭은 지정계시대의 가로폭(계시틀을 제외한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세로폭은 9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계시대의 규격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다. 2. 현수막을 개시한 자는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또는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표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

	<p>제18조(현수막 지정개시대의 설치·관리 기준 등)</p> <p>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현수막 지정개시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특 15미터이하의 도로변으로서 보행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주요 간선도로변으로서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규격은 가로 7.2미터이내, 세로 7미터이내로서 현수막의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1.5미터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작은 스펠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광고를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격·자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현수막 지정개시대를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의 지정개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동시에 2개이상 게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정개시대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이내로 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게시순서는 신청의 순으로 하며, 게시신청 현수막이 게시가능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종교·문화·예술·체육 등 비영리 목적의 행사용, 기타 순으로 게시순서를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제1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현수막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p>제19조(벽보의 표시방법)</p> <p>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된 벽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어야 한다. 다만, 지정벽보판의 규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정벽보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벽보판의 설치 위치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 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p>2.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3미터 이내, 높이 2.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p> <p>3. 지정벽보판의 사용기간은 1회 15일이내로 하며, 동일 내용의 벽보를 2회이상 계속하여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벽보의 게시 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0조(현수막 지정개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p> <p>구청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개시대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현수막 지정개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제21조(전단의 배부방법)</p> <p>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단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함 등을 통하여 배부하여야 하며, 산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p>제22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p> <p>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내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광고물등이 축사 또는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기타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p>② 영 제31조제3항제6호(영 제3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내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이내이어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내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제25조제1항제2호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를 주거나 침해하지 아니하는 빛의 밝기·색깔의 표출지수(장애·침해 여부의 결정을 포함)를 광고물별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표출지수를 위반한 광고물등의 관리자에게 법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기의 성능 개선·전부 또는 일부의 표출중단·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면적 1제곱미터이하로서 구청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은 광고표를 시간별로 20퍼센트이상으로 하며, 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가에 관한 사항은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각각 정하여 표출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한다.</p>
	<p>제23조(표시방법의 완화)</p> <p>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2.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p>제4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p> <p>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육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기타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p>②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육외광고업무 담당과장 또는 과장급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의 수는 3인 이상으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p> <p>③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제34조 내지 제36조 및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4조(위원회의 구성)</p> <p>①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위원은 다음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육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구의원(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9인미하로 구성한다.</p>
<p>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p> <p>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시조례를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써 구청장이 정 또는 부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 나. 세로 5미터이상의 둘줄간판 다.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라. 지주이용간판(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마. 현수막을 게시할 현수막게시시설 바. 광공시설물이용 광고물 사.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아. 가로·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광고물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다만, 벽걸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다. 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p>제25조(위원회의 기능 등)</p> <p>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조례 또는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광고물등에 광고주를 위한 표시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의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③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② 소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p> <p>③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④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장은 유파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허가신청 전에 도면·서류 등에 의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심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이내(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영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그 구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장은 유파광고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운영에 관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이내(소위원회는 10일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26조(위원회의 심의사항)</p> <p>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심의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가로형·세로형광고물 세로 5미터이상의 둑을광고물 육상광고물(육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광고물(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 현수막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개시시설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및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외의 광고물등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다만, 배일등 또는 형광등 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한다. 선전탑 및 아취형광고물 <p>② 위 ①항의 외 광고물은 소심의로 할 수 있다.</p>
	<p>제27조(안전도검사)</p> <p>①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들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개시시설중 상단이 당해 건물 4층이상에 설치된 것 공연간판중 영 제38조제3호·제4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판류형간판 기타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광고물등

	<p>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안전도검사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자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3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표시허가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 또는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전문가에게 광고물등의 설명서·설계도서 및 건물설계 등에 의한 안전성 확보여부를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p>
<p>제6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 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한 육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단체 또는 법인을 포함) 	<p>제28조(안전도검사업무 위탁)</p> <p>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업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p> <p>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자를 지정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고, 위탁받은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육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각1인 이상 2. 작업차량, 사다리, 철연저항제, 카메라, 망원경 3. 기타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장비 <p>⑤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자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4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건축분야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p>3.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는 제4항제1호의 자격을 갖춘 전기분야 1인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가. 전기사업법 제73조 외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선임된 광고물등</p> <p>나. 배온류 또는 전파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광고물등 표시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광고물등</p>
<p>제1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반환)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광고물등(예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 등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u>별지 제9호서식</u>에 의한다.</p>	<p>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등)</p> <p>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때에는 그 장소에서 쉽게 눈에 띄는 곳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 다만, 벽보·전단·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는 광고물등 또는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을 제거한 위치 2.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3. 광고물등을 폐기처분한 경우 그 사유 <p>②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물등의 종류·규격·표시내용·수량 2. 위반장소·위반사항 및 관련규정 3. 광고물등을 예각한 경우 예각대금 4. 보관일시·보관장소 및 취급자 등 5. 광고물등 또는 예각대금의 반환절차 및 반환시 과태료·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p>③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목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p>
<p>제7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례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u>행정대집행법</u>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 할 수 있다.</p>	<p>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의 징수)</p> <p>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례방지를 위한 광고물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 후 <u>행정대집행법</u>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p>
<p>제8조(육외광고업의 신고) 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u>별지 제2호서식</u>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② 육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u>별지 제3호서식</u>의 육외광고업 신고필증 제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u>별지 제4호서식</u>의 신고서에 육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1조(육외광고업의 신고)</p> <p>① 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육외광고업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수리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육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육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육외광고업 신고필증 제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육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육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재개업 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희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기록, 관리함에 있어 행정처분 자료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영 별지 제10호서식의 유희광고업 행정처분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p>
<p>제9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유희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u>별표 1</u>의 유희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수강절차·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p> <p>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④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u>유의광고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u></p> <p>⑤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u>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u></p>	<p>제32조(유의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p> <p>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유의광고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계획(이하 이 조에서 "교육계획"이라 한다)은 <u>[별표1]</u>의 유희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종류, 내용 및 시간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의 종류를 통합 또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3월 이전에 교육이 있는 경우와 공고한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해당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 내용, 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실시 방법, 수강절차, 비용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p> <p>③ 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유희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p> <p>⑤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한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유희광고업종사자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질병 또는 실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 기간과 중복된 때 3. 그밖에 관습상례, 제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p>
<p>제10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u>별지 제7호서식</u>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p>	<p>제33조(교육의 위탁)</p> <p>①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 및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하여 하며, 교육의 실시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교육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와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희장과 일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교육 위탁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교육을 위탁받은 자와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2월 이전에 교육이 있는 경우와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전까지 해당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과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용의 징수 및 그 집행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제3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p>
<p>제11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u>별표 2</u>,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u>별표 3</u>,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육의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u>별표 4</u>에 의하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을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p> <p>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산업체 구인벽보, 미아찾기 벽보, 기타 시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 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설치하거나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p>④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광고물 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설치하거나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50퍼센</p>	<p>제34조(수수료) <p>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육의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요금계기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경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수수료 청수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p> <p>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정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중 미아 찾기 벽보등 기타 주민편익을 위한 내용의 벽보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구청장이 따로 정한 벽보판에 부착하는 벽보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등(이 경우 광고물등의 일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금액만을 면제한다) 4. 구청장이 수립한 특별정비계획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또는 특별정비기간을 정하여 허가·신고하는 광고물등 </p>

<p>트를 연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u>별표 5</u>에 의한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제35조(과태료의 부과·징수)</p> <p>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5]에 의하며, 금액산정 방법은 영 제46조의 계산방법에 의한다.</p> <p>② 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p> <p>③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영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다만 과태료부과사항의 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제1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u>별표 6</u>에 의한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u>제12조제2항</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36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p> <p>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별표 6]에 의하며, 금액산정 방법은 영 제46조의 계산방법에 의한다.</p> <p>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때에는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다만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의 기록을 관리할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제15조(광고물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특정구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등의 특별정비사업에 대하여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2. 이자율 : 연 5퍼센트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 <p>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단의 발생·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p>	

<p>⑤ 구청장은 응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응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⑥ 위원회에서 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기타 보조 또는 응자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재정 관련 공무원과 재정 또는 광고물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외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부 칙<2002.5.10></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p> <p>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육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부 또는 육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p>	<p>제37조(시행규칙)</p> <p>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조치)</p> <p>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p> <p>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 또는 표시한 광고물등은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그 표시기간 종료일을 2008년 12월31일까지로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p> <p>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육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접수되었거나, 안전도검사 신청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육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업부 또는 육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이를 시행할 수 있다.</p>